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1. 4.



김화덕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명서

설 명 자: 김화덕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달서문화재단이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정관 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4월 7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단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821033
------------	----------

발의일자: 2021. 4. 7.

발의자: 김화덕, 박정환, 배지훈, 박왕규, 안대국,
박재형, 원종진, 홍복조, 윤권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달서문화재단이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정관 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함.(안 제6조제3항)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관)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6조(정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u> <u>을 지체없이 달서구의회(이하</u> <u>“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u>한다.</u></u>